

의안번호	—
의 퇴 인	노종면 의원
회 답 일	2024. 11. 13.
추 계 번 호	24B33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억 200만원(연평균 6,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안 제22조의7)	56	59	60	63	64	302	60

주: 1. 개정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 연구원 5명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인건비(투입비율 20%)·회의비·자문비 등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용인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5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 ¹⁾ 에 따라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음	재량규정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5항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적용²⁾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 10.)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의 조치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공개 (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³⁾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⁴⁾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제22조의7제1항),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의7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2조의7제4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해당 조항 시행일('23.7.4.)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메타,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의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음

[표 2]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조치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제출자료 현황

해당조문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제출자료
제22조의7 제3항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메타, 카카오 등 5개 사업자	시행령 제30조의8제2항 각호의 조치의 이행현황 및 계획(총 10개 항목) ※ '24.1월부터 매년 1월 말까지 제출
제22조의7 제4항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메타, 카카오 등 5개 사업자 ※ 8건 장애에 대해 자료요구	발생한 장애 관련 장애개요, 시행령 제30조의8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현황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3]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의무(시행령 제30조의8제2항) 주요 내용

구 분	세부내용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 단말·사업자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설비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 방지 · 서버 다중화, 전송량 최적화 등 트래픽 집중 대비 조치 · 트래픽 증가 대비 서버 용량 증가, 트래픽 경로 최적화 등 조치 · 트래픽 경로 변경 등 필요시 기간통신사업자에 사전통보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 이용자 요구사항 한국어 접수 위한 온라인·ARS 등 시스템 확보 · 속도 저하·서비스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 상담 연락처 고지 · 사업 휴업·폐지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정지·해지 시 이용자 자료 전송 수단의 확보
기타	·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 상기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 별로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결과 등을 분석할 경우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원(5명) 사용 및 회의비·자문비 등의 경비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억 200만원(연평균 6,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인건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재난관리사업(수행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 투입되는 인력 기준을 준용하여 총 5명이 부가통신사업자별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이행 현황 및 계획(매년 1월말 제출) 및 연간 발생 부가통신서비스 장애(20~30건)에 대해 조사·분석한다고 가정하여 용역 참여율을 10%로 가정(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책임연구원: $3,622,585\text{원} \times 2\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10/50\% = 1,739\text{만원}$
 - 연구원: $2,777,750\text{원} \times 3\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10/50\% = 2,000\text{만원}$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회의비 및 자문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에 따라 네트워크, SW, 재난안전, 통계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4인, 사업수행인력 5인, 부처담당 공무원 등이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법률전문가, 통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연 5회 받는다고 가정
 - 회의비: $30\text{만원}^{5)} \times 4\text{명} \times 12\text{회} = 1,440\text{만원}$
 - 자문비: $50\text{만원}^{6)} \times 2\text{명} \times 5\text{회} = 500\text{만원}$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5)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6)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비용은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집행함

[표 4]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관련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37	39	40	42	43	201	40
회의비 및 자문비	19	20	20	21	21	101	20
합 계	56	59	60	63	64	302	60

주: 1. 개정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 연구원 5명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인건비(투입비율 20%)·회의비·자문비 등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용 인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 연구원 5명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인건비(투입비율 20%)·회의비·자문비 등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용 인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